

이 자료는 지난 8월 31일 웨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한국자원경제학회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편집자註>

중동사태와 우리경제의 대응 방안

1. 원유시장의 환경변화와 유가전망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으로 시작된 中東사태가 거의 한달 가까이 전세계를 불안과 긴장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아직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하에서 아무도 자신있게 내일 닷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런 중에서도 다행한 것은 한때 주요 유종이 모두 배럴당 30달러를 넘어섰으나, OPEC의 증산결정과 함께 25달러선으로 하락하여 급등추세가 한풀 꺾였다는 것이다.

앞으로의 中東사태는 페르시아만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당사국들의 정치, 군사적 역학관계에 의해 해결될 것이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비전투 군수품을 지원한다든지 UN의 결정사항에 지지를 보내는 정도일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그동안 긴장되었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이번에 발생한 페르시아만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경제주체별 대응자세,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대비한 정부의 중단기 대책을 검토하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페르시아만 사태가 3차 석유위기로 발전하게 될지의 여부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다행히 전쟁없이 사태가 해결될 경우에도 세계석유시장은 큰 변화를 겪게 될 것만은 확실하다.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기 6일전에 개최된 제87차 OPEC정기총회에서는 1987년 이래 배럴당 18달러이던 기준유가를 21달러로 3달러 인상하고 '90년 하반기 산유량쿼타를 하루 2249.1만배럴로 결정함으로써 그동안 쿠웨이트와 아랍에미리트등의 상승적 쿼타위반으로 붕괴직전에 있던 OPEC의 쿼타제가 어렵게 소생하였다. 그러나 이라크는 기준유가의

신 의 순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인상에도 불구하고 금년중 유가를 25달러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주장하여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의하여 주도되던 안정가격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였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나제르 석유장관은 석유생산국과 소비국이 상호협력함으로써만이 에너지 안보를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여 양자간의 상호의존관계에 바탕을 둔 세계석유시장의 안정을 희망하여 왔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은 이러한 온건 中東산유국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은 꼴이 되었으며, 앞으로 中東산유국간의 갈등과 이해대립으로 인한 충돌의 불씨가 마련된 셈이다. 결국 이러한 中東의 불안요인은 국제원유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80년대 후반의 석유수요 증가추세, OPEC점유율의 상승, 동구자유화로 인한 OPEC석유에 대한 수요증가등의 요인과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킴으로써 페르시아만 사태가 해결된 이후에도 고유가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절적 요인, 기타 기대치 못했던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단기적 유가 등락현상은 계속될 것이나 대략 배럴당 21달러에서 25달러 이내로 당분간 평균유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 석유사업기금 운용현황과 문제점

만약 원유도입 평균가격이 배럴당 25달러이면 금년중 남은 4개월간 원유도입 추가부담액이 5천2백10억원, 석유제품도입 추가부담액이 800억원등도 포함 6천10억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하며, 내년도에는 2조원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한다고 한다. 이 경우 정부는 우선 금년도 4개월간의 추가부담요인중 1천3백20억원은 원유도입 관세율 10%에서 1%로 인하함으로써 흡수하고 2천1백20억원은 석유사업기금중 금년도 운용기금으로, 그리고 나머지 2천5백70억원은 은행에 예치중인 유가완충재원으로 보전함으로써 금년도에는 국내 유가인상을 앓겠다고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우리나라 석유사업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관하여 살펴보자. 먼저 조성배경을 살펴보면 1차 오일쇼크이후 필요한 석유의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느낀 정부는 '77년 12월 석유사업법을 개정하여 기금설치의 근거를 마련하고 '79년 10월부터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하였다. 원래는 석유비축과 석유개발을 주목적으로 출발

하였으나 '86년 5월부터 비축, 개발, 안정의 3개 계정을 석유사업기금으로 통합하여 도입원유가가 배럴당 18달러 이상이면 차액을 기금에서 보조해 주고 그보다 낮을 때는 차액을 징수하여 국내유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였다.

석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의 용도는 에너지 관련사업으로 석유의 비축, 개발, 가격안정이며 그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자원개발사업으로 에너지융합리화사업, 정유시설현대화사업, 석탄산업, 전원개발사업, 가스사업과 기타 에너지자원개발 및 생산의 육성추진사업등 있다.

석유사업기금은 '79년이후 '89년말까지 5조2천억원이 조성되었는데 그중 72%인 3조8천억원은 원유가격이 급락한 '86년이후 '89년까지 4년간 조성되었다. 기금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기금운용이 큰 문제로 등장하였으며 기금폐지론까지 제기되었으나 유가급등시에 대비한 유가완충목적으로 기금징수는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여유기금을 일반경제부문에 지원하게 되었다.

기금의 사용내역을 보면 64%는 에너지 관련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5%인 2천9백2억원이 '90년도 사업비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1%인 1조6천2백39억원이 유가완충재원이다. 유가완충재원 중 1조3천2백억원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되어 있으며 금융기관에 예금된 액수가 4천2백20억원이다. 에너지관련사업에 사용된 3조3천3백억원중 9%는 석탄가격안정기금, 원유도입선다변화 지원금, 유개공운영비등으로 무상보조원 지원금이며 63%는 유전개발사업, 석탄광개발 및 저탄, 전원개발등에 용자되었고, 나머지 27%는 원유비축시설의 건설 및 비축원유구입에 주로 사용되었다.

석유사업기금 운용의 문제점으로 다음의 사항들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필요시 제때 유가완충용 기금을 동원할 수 있는냐는 것이다. 특히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에 예탁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나 유가의 급등현상은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결국 기금회수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한다. 따라서 재특예탁금을 필요시 적시에 회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中東사태가 해결된 후에도 원유도입가가 배럴당 18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계속 기금을 방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유가완충재원은 점차 고갈될 것이다. '89년도 석유사업계획 수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연간조성액 1조3천2백61억원중 59.4%인 7천8백83억원이 신규조성분이었다. 따라서 유가강세로 신규기금이 조성되지 못할 경우 유가완충재원이 줄어드는 한편 석유비축, 유전개발을 비롯하여 에너지융합리화사업, 도시가스사업, 석탄가격대책등 지속사업의 추진이 제약받게 될 것이다.

'86년 이후 '87년까지 4년간의 저유가 시대에는 막대한 액수의 석유사업기금이 조성되었으나 앞으로는 기금의 추가 조성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한 기금의 절대액이 매년 줄어들게 될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기금정수의 기준이 되는 원유도입가격을 대폭 인상하거나 새로운 정수원을 개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석유의 비축과 해외유전개발은 비상시 공급의 안정과 석유자급도의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석유사업기금이 존속되어야 하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유가완충을 위한 기금의 운용은 그 유용성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유가완충용 재원의 확보라는 발상은 '86년 이후 원유가의 급락으로 인한 국내유가 인하요인을 완화하여 국내유가의 급격한 하락을 막고 석유사업기금조성의 명분을 살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유가급등시 보조를 통한 저유가의 유지는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 정작 소비절약이 필요한 시기에 소비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가져오며, 유가완충재원의 존재가 신속적인 유가관리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유가완충재원은 도입원유가의 단기적 등락을 국내물가에 그대로 반영함으로써 나타날 혼란을 방지한다는 정도의 의미는 부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역할을 꼭 정부가 담당하여야 한다는 그 자체에 근본적인 의구심을 갖게 되어 있다. 즉 유가완충재원의 존재로 인한 부작용은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3. 유가관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가격자율화 비율은 18.

3%이며 용제, 항공유, 아스팔트 이외에 고급 및 군용휘발유가 '89년에 자율화되었다. 위에 든 6종의 석유제품을 제외한 전종목에 대해서는 유종별, 유통단계별 최고 가격고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때 석유제품의 판매가격은 복합단가에 의해 결정되며 복합단가는 정유5사의 평균비용을 기준으로 세후 9.7%에 해당하는 허용이익을 포함하는 총제조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석유제품의 세전공장도가격은 원유관련비용과 정제비, 수송비, 이윤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의 석유제품 최고가격고시제도는 과점산업인 석유업체들의 담합을 통한 과도한 이윤획득을 방지하고 가격안정을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근본적인 취지와는 달리 국내 유가정책이 물가안정위주로 운용됨으로써 저유가가 지속되어 석유소비를 조장하는 폐단을 가져오게 되었다. 즉 석유소비의 절약이 가져오는 석유의존도의 감소 그리고 국제수지상의 플러스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물가안정측면만을 강조함으로써 소비조장적 저유가 정책을 지속하여 왔던 것이다. 현재의 보통휘발유 소비자가격은 1ℓ당 373원으로 1981년말의 740원에 비해 절반수준이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1/3수준에 불과하다. 등유는 기간중 1ℓ당 292원에서 186원으로 하락하였고, 경유는 1ℓ당 278원에서 179원으로 하락하였다. '80년대 후반의 휘발유와 등유소비의 급등현상은 소득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도 큰 몫을 했지만 정부의 저유가정책에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가 석유제품의 가격결정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국제 석유시장의 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80년대 초까지는 1, 2차 석유위기의 여파로 유가는 오르는 것이 정상적인 것으로 인식되었으며 따라서 국내유가 인상에 대한 저항감도 적었다. 그러나 '83년 이후부터 유가는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왔기 때문에 유가인상에 대한 소비자의 저항감이 크다. 더구나 1조6천억원에 달하는 유가완충자금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기금조성시의 약속대로 이 자금을 유가인상억제를 위한 완충자금으로 사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유가완충자금은 유가의 단기적 등락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와 같이 구조적 요인에 의해 평균유가의

인상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는 국내유가의 인상을 통해 소비절약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유가인상이 물가에 끼칠 충격, 그리고 유가완충재원을 사용해서 국내유가인상을 억제할 수 밖에 없는 정부의 부담감이 유가의 신속적 대응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정부는 최고가격고시제도와 병행하여 연말에 정유사의 실현이익이 허용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석유제품가격인하나 석유사업기금 징수를 통해 환수하는 연말정산제도를 실시함으로써 '83~'88년 기간중 정유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이 7.3%로 제조업 평균이익률인 9.0%에도 미달하였다. 그 결과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확장과 수요구조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중질유 분해시설 및 탈황시설등 정제시설고도화 투자재원조달에 애로가 발생함으로써 국내정유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될 경우 외국의 석유제품이 자유롭게 국내시장에 진출하게 될 것이고 이때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국내정유업계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유가정산제도는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신규발생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최종이익이 허용이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밖에도 유가정산제도는 비용절감등 경영개선을 통한 이익증가의 유인을 무산시키며 기업의 창의력개발을 저해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80년대 중반 이후부터 국제원유가가 안정되고, 원유 비축능력이 향상되는 등 공급안정성이 제고되자, 전반적 규제완화정책의 일환으로 '88년 5월 석유사업자율화 추진시안을 발표하였고 '88년 11월과 12월 한국개발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석유산업규제합리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은 3단계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에서는 국내유가를 환율에 연동시키고 석유류관련 세제를 개편하여 국내유가구조를 개편하고, 2단계에서는 국내석유제품을 원유가 또는 국제석유제품가격에 연동시키고 아울러 석유제품의 소비자가격고시제를 폐지하며, 3단계에서는 유가자유화를 이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에서는 공히 사후 정산제도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석유산업의 경우 국제원유가의 급변등 경영의

적 요인에 의한 국내유가의 급변요인이 크고, 시장구조가 과점적인 점을 감안하여 어떤 형태로든지 이윤규제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4.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의 개편

우리나라는 '86년 이후 3低호황을 맞아 고도성장을 이룩하였으며 '89년까지 4년간 총 279억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한국경제에 예기치 않은 호경기를 제공한 요인은 무엇보다 유가폭락에 따른 저유가시대의 도래이다.

'86년의 원유도입량은 '85년도에 비해 16%가 증가하였으나 원유도입액은 유가하락으로 인해 20.3억달러가 준 32.6억달러(FOB기준)였다. 만약 '85년의 원유도입단가인 26.6달러가 지속되었다면 '87년에 21.1억달러, '88년에 33.4억달러, '89년에 32.2억달러등 4년간 107억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유가인하에 따른 생산비하락과 이로 인한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수출증가를 고려하면 무역흑자의 절반이상이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른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노사분규로 인한 임금의 고속인상과 선진국의 개방압력이 날로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금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을 위협하고 있고 무역수지는 적자로 반전되어 누계액이 국제수지기준으로 10억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中東사태가 터져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운 지경에 빠지게 되었다. 우선 9월~12월중 원유도입단가가 배럴당 16.5달러보다 6달러만 인상되어도 7억달러의 추가부담요인이 발생한다. 연간으로 20억달러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그밖에도 국제원유가의 상승은 美國, 日本등 우리 경제의 주요수출국의 경제성장 둔화를 초래함으로써 이미 어려움에 직면한 국내기업의 해외수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 국제수지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다. 또한 유가인상은 국내제조업체의 생산원가의 상승을 유발하여 국내물가에 상승압력을 가할 것이며, 수출상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여 우리 상품의 대외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장단기 대응책이 마련될 수 있겠으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에너지소비절약이다. 가정, 상업, 수송부문의 에너지소비는 그동안 과소비현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절약의 여지가 크며 이들 비제조업분야의 석유소비증가 기여도가 65%에 달하는 만큼 우선 이 부문에서 최대한 절약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력하여야 할 것이다. 산업부문에서의 에너지절약은 단순절약, 에너지대체, 산업구조개편 등의 단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에너지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구조적 전환은 기술집약형, 자원절약형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점차 바꾸어 나가는 것이다.

'80년대와 같은 저유가시대에는 석유와 대체에너지를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사용하는 신속적 에너지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앞으로 고유가시대가 지속되고 석유에의 의존도를 점차 줄여나가야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차제에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자체를 과감히 에너지저소비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향후 에너지정책은 산업정책과 긴밀한 연계하에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70년대에 들어와 기초소재의 수입대체를 목표로 철강 및 석유화학산업을 집중육성함으로써 조선, 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석유화학등 자본집약적 산업이 우리경제의 핵심산업이 됨으로써 이후에 육성되기 시작한 컴퓨터, 반도체등 전자산업과 함께 우리경제의 산업구조는 경공업 중심에서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즉 1971년에는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부가가치비율이 37:63이었으나 1981년에는 52:48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커졌으며 1988년에는 58:42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수출의 경우 1971년에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28:72였으나 1988년에는 58:42로 중화학공업의 수출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화학공업에는 전자, 자동차, 기계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육성해야 할 분야도 있으나 철강, 석유화학산업은 에너지다소비업이며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원유가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고유가 시대에서는 대외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어 원유와 LNG의 생산국이 저렴한 생산비를 무기로 국내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시장에 참여할 경우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

는 유가급등에 따른 단기적 대책뿐 아니라 에너지절약형, 기술집약형 경제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한 청사진을 차제에 마련해야 할 것이다.

5. 경제주체별 대응방안

유가상승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그리고 소비자 모두가 협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유가인상에 따른 국내물가 상승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물가안정정책을 고수하여야 할 것이다. 그와 동시에 한편으로는 이번 중동사태를 계기로 저유가시대는 지나갔고 국내유가도 궁극적으로 인상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국민에게 충실히 설득하여 기업과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에너지소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절약이 가능한 분야를 계속 발굴하고 에너지절약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책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필요물량을 적기에 차질없이 공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거나 석유제품의 매점매석등 부도덕한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의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유종별 가격구조를 개편하여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고 기업의 원가인상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조치도 필요할 것이다.

기업은 '86년 이래 3저호기를 맞아 호황을 맞았으나 이를 대외경쟁력제고와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체질개선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였다. 그동안 임금의 급격한 상승, 무역자유화 압력, 그리고 후발개도국의 추격등으로 우리 기업의 위치가 매우 불안한 과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처지에서 중동사태의 발생은 고유가로 인한 원가상승의 추가적인 부담을 기업에게 안겨 주게 되었다.

경제환경이 좋을 때는 기업경영이 큰 노력없이도 잘 굴러간다. 그러나 최근과 같이 증권시장의 불황으로 인해 기업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고임금, 고유가, 고금리등 악재만이 가득한 상황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우선 기업을 살리기 위해 경영자와 근로자가 합심하여 원가절감, 경영개선, 기술개발등을 통해 활로를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고유가시대를 맞아 경영자는 에너지절약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에너지절약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등 꾸준

히 에너지절약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근로자들은 고통을 분담하는 의미에서 물가상승의 추가적 요인이 되는 임금인상요구를 최소한도로 자제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의 에너지소비가 경기하락에도 불구하고 계속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저유가시대에 자리 잡은 낭비적 에너지사용과 사회전반적인 과소비풍조에 기인한다. '80년대 중반이후 자가용승용차의 연간증가율은 30% 이상이었고, 석유소비증가의 40% 이상이 수송등 석유수요증가에 기인하였다. 또한 가정과 상업부문에서

취사용과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프로판, 등유, 경유의 석유소비증가기여도는 25%에 달했다. 따라서 국민모두의 협조와 에너지절약 노력없이 석유소비의 증가율을 둔화시킬 수 없다. 몸에 밴 습관, 그리고 편안함을 쉽게 포기하거나 바꾸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처해 있는 어려움, 그리고 여기에 추가된 유가급등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에너지소비 절약과 물자절약, 그리고 과소비풍조의 척결이 꼭 필요하며 이번의 中東사태를 전회위복의 계기로 삼는 국민의 단합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

□ 관 보 □

◎동력자원부고시제90-54호

전기사용제한에 관한 제한기준 및 방법

전기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용제한에 관한 제한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1990년 9월 1일
동력자원부장관

— 다 음 —

- 사무실 및 일반공장의 백열등 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다음의 장소는 예외로 한다.
 - 설계·제도·계산등 정밀작업을 요하는 장소
 - 인쇄·섬유·염색등 대상품의 색을 판별할 필요가 있는 장소
 - 천정높이가 10m 이상인 장소 또는 내부온도가 0℃이하의 장소
 - 부식성 또는 폭발성가스가 발생하는 장소
- 승강기는 3층이하 운행을 금지하고 4층이상은 격층으로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병원, 관광호텔 및 화물용은 예외로 한다.
- 투광기의 옥내의 사용을 금지한다.
- 일반사설체육시설의 야간조명설비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정구장은 예외로 한다.

- 소형조명전구를 이용한 광고물의 옥외사용을 금지한다.
- 광고선전용 옥외간판은 업소당 1개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금지한다.
- 네온사인은 24:00부터 익일 일몰시까지 전기사용을 금지한다. 다만,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 및 공익을 위한 안내용은 예외로 한다.
- 전자식전광판(큐빅보드, 자기반전식, 자체발광식, LED 방식, 비디오 스크린등 포함)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사용을 금지한다.
 - 의료기관, 약국, 역, 터미널의 안내용
 - 관광호텔 안내용으로서 일몰후부터 24:00까지의 사용
 - 공익을 위한 안내용으로서 일출후부터 24:00까지의 사용
- 영화관은 24:00부터 익일 일출시까지 영화상영을 위한 전기사용을 제한한다.
-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부 칙 —

- 이 고시는 '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동력자원부고시 제82-31호('82. 8. 1)는 폐지한다.